〈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번호 20220429]

[최초 등록일 : 2022.05.19]

[최종 등록일 : 2023.12.14]

79mexx@gmail.com

별컵맥주

정보공개서

㈜더블류스텔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2024.4.19. [㈜더블류스텔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08, 지1층(용답동, 인암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499-829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499-829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70-8244-4795]

목 차

Ι.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Ⅲ.	교육・훈련	에 대한 설명
ΙΧ	가맹본부의	지영점 현황 (시설)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별컵맥주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08, 지1층(용답동, 인암빌딩)				
(주)더블류스텔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라	2017.03.14.		2017.04.03	우상미,김일 민	02	2-499-8295	02-499-8298
	법인등록번호	110111	-6344123	사업자등록번	호	583-8	7-0060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 L Q 0 l	O Alml /		경	기도 안산시 구봉절	일 59	
사용인	우상미/	(주)케이박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자)	(주)케이박스		우상미	032-891-5888	3 032-891-5889	
		пр зз (УСС2525)	서울시 성동구 천	<u></u> 호대로 308, 지1층	충(용답동, 인암빌딩)	
	우상미,김일민 / ㈜더블류스텔 라	맥쓰(MEXX) 세계치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에게시간	우상미/김일민	070-8244-4795	02-499-8298	
21 0 01		24TS LOUNGE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08, 지1층(용답동, 인암빌딩)			
사용인 (대표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우상미/김일민	02-499-8295	02-499-8298	
		별컵맥주	서울시 성동구 천	<u></u> 호대로 308, 지1층	충(용답동, 인암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우상미/김일민	02-499-8295	02-499-8298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별컵맥주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상 호	별컵맥주	치킨 요리와 생맥주 전문점
상 호	별컵맥주 oo점	치맥
21-17(21111 2 17)	별컵	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20054357 서비스표 등록번호: 4020822260000
상표(서비스표)	별* 컴맥주	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20054358 서비스표 등록번호: 4020822250000
광 고		별컵이 빛나는 밤에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79,676	329,680	49,996	38,788	-92,913	-83,770
2022년	230,465	428,214	-197,749	49,442	-114,486	-247,745
2023년	149,003	452,061	-303,057	156,079	-106,066	-105,308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4TS Lounge는 2023년 5월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하여 더 이상 가맹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חאאו	0] =	-1 7101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Ozlal	2012.08. ~ 2020.07		맥쓰세계치킨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우상미	대표이사	2017.04. ~ 현재	㈜더블류스텔라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관련 임원	김일민	대표이사	2021.07.26.~현재	㈜더블류스텔라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임원イ	누(명)	지워스(면)	
시점	상근	비상근	식년구(경)	
2023년 12월 31일	2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24TS LOUNGE	가맹사업 경영	2019.12. ~ 2022. 03.31	24TS LOUNGE(등록번호: 20200328)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710ET	맥쓰(MEXX)세계치킨	가맹사업 경영	2020.8. ~ 현재	맥쓰(MEXX)세계치킨(등록 번호: 20130144)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출원 제4020220054356		
별컵 별컵	상표권	2022.3.24 출원 등록중	등록 - 4020822240000	·㈜더블류스텔	2033-09-13
之 ¹ 日	0 T C		출원 제4020220054357		
			등록 - 4020822260000](1)의 글 ㅠ ㅡ 글] 라	
STAR CUP	상표권	2022.3.24 출원	출원 제4020230121649	·	2033-10-10
BEER	оже	등록중	등록 - 4020934170000		2000 10 10
별컵맥주	상표권	2022.3.24 출원 등록중	출원 제4020220054358 등록 - 4020822250000		2033-09-1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별컵맥주 가맹사업 현황

1. 별컵맥주를 시작한 날: 2022년 4월 25일

2. 별컵맥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더블류스텔 라	별컵맥주	우상미/김 일민	2022년 4월25일~현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08 지1층(용답동, 인암빌딩)

3. 별컵맥주 업종

영업표지	업종			
벽컨맥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열십백구 	치킨	닭고기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별컵맥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021.12.31	1.	2	2022.12.31	1.	2	2023.12.31	l.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_	-	2	2	_	6	6	-
서울	_	_	ı	1	1	-	_	_	-
부산	_	_	ı	-	_	_	_	_	_
대구	_	_	ı	-	_	_	3	3	-
인천	_	_	1	-	_	_	-	_	-
광주	_	_	1	-	_	_	-	_	-
대전	_	_	-	-	_	_	-	_	-
울산	-	_	ı	-	-	_	-	-	-
세종	-	-	-	-	-	-	-	-	-
경기	_	_	1	-	_	_	1	1	-
강원	_	_	ı	-	-	_	-	_	-
충북	-	_	-	-	_	_	-	_	-
충남	_	_	ı	-	-	_	_	_	_
전북	_	_	ı	-	_	_	1	1	_
전남	_	_	ı	1	1	_	1	1	-
경북	_	-	-	-	_	-	_	-	_
경남	_	_	ı	-	-	_	-	_	-
제주	_	_	-	_	_	_	_	_	_

5. 최근 3년간 별컵맥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_	_	_	_	_	-
2022	_	2	_	_	_	2
2023	2	5	1	_	_	6

6. 별컵맥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별컵맥주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여어교기	정보공개서	어 조	가민	행점/직영점의	구
一十七	경오/의급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더블류스 텔라/우상	맥쓰(MEXX)세계치킨	20130144	치킨	8/0	5/0	4/0
가맹본부	델라/우성 미,김일민	24TS LOUNGE	20200328	기타외식	1/0	0/0	0/0

24TS Lounge는 2023년 5월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하여 더 이상 가맹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별컵맥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	점사업자의	l 연간 평균	<u>구</u> 매출액		
7103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매출 ^액	평균 (상한)		평균 ((하한)	비고
지역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6	167,140	6,128	248,906	16,593	75,562	2,605	
서울	_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3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1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전체매출경우, 2023년 6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2개 가맹점(전주혁신점, 대구칠곡구암점)을 제외하였습니다.

4개 가맹점 중 1개 가맹점(나주혁신도시점)을 제외한 3개 가맹점(대구대명점, 대구연경점,양주옥정점) 매출액은 영업일이 1년 미만 매장으로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 하였음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 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8. 별컵맥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별컵맥주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	231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별컵맥주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해당사	하 없음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별컵맥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단위: 🏄	지출 비용 천원,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_	_	20,000	20,000	_	
광고,판촉	비공개	비공개	20,000	20,000	_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신사업 추진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www.hanaescrow.co m	1599-111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 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별컵맥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 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별컵맥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1,1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최초 2년 계약 기간 내에 중도 해지 시	최초 계약 후 2년 경과 후	반환 금액은 2년 계약기간 중 잔여 기간을 일할 정산
창업 컨설팅비	1,1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매장의 시장성 평가 이후에 환 불 불가
개점 용역비	5,5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사업자 등록 이 전	도씨 시미스 제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 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 면 반환되지 않 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현금)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당사에 상표사용료, 물품대금, 광고비, 판매촉진비 미납, 당사 거래처 외상대금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14,000
가입비	1,100
창업컨설팅비	1,100
개점용역비	5,500
교육비	3,300
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5,800				
인테리어 기본 (점포 내장공사)	지정업체 (자체시공 시 가맹본부 에 감리비 지급)	26,400 (15평 기준)	1,760	계약 체결시 개별계약	공사 전 계약취소	49.5㎡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760천원 추가부담
별도공사 (추가 옵션 공사)	지정업체	19,800		계약 체결시 개별계약	공사 전 계약취소	냉난방, 철거, 닥트, 접이식도어, 도시가스 등
주방기기 (냉장고 외)	가맹본부	13,200		계약 체결시 개별계약	발주 전 계약취소	
가구 및 비품	가맹본부	13,200	880	계약 체결시 개별계약	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 싸인	가맹본부	5,500		계약 체결시 개별계약	해당사항 없음	외부 간판
운영물품	가맹본부	4,400	292	계약 체결시 개별계약	발주 전 계약취소	집기, 물품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3,300		물품 공급 3일 이전	발주 전 계약취소	식자재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55만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499-8295)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별컵맥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장 8번에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매출의 2%/월	익월 5일	반환불가	상표사용 대가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발생시 실비	개별청구	반환불가		매장별 사전협의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발생시 실비	개별청구	반환불가		매장별 사전협의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발생시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실시 1일 이전	교육 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1,500~5,000	간판 변경 계약시	반환불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실비 협의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8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협의하여 결정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시
가맹비	없음	재계약 채결시			상표 및 시스템사용료 미포함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위치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 비용 또는 시설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 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별컵맥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 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 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별컵맥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 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품목이 많아 별지(2) 참조 하였습니다.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별컵맥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별컵맥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연간 거래총액)	비고
해당없음					

2) 당사가 별컵맥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에 따름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단, 가맹점 고객의 특성상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의 서면동의를 언어야 함.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만 19세 미만 고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경쟁업체	원재료 및 부재료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판매가 목적인 고객	일체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올마고 치킨	18,900		
스파이시 올마고 치킨	18,900		
새우 감바스	15,000		
칠리 새우	14,000		
매운 새우 브로콜리 볶음	14,000		
비프치즈 퀘사디아	12,000		
이탈리아 콤보 페스츄리피자	12,000		
트리플 치즈 페스츄리파자	11,000		
스위트 치즈또띠아	8,000		
봉골레 파스타	13,000		
미트 치즈 펜네	12,000		
골뱅이 비빔면	13,000		
땡초 간장 치킨	12,000		
양파치킨	12,000		0000 1001 715
유린기	12,000		2023. 12월 기준
후라이드 순살치킨	12,000		담당의 서면 동의없이
후라이드 치킨	17,900		가격을 변경하여
맑은 홍합탕	12,000	가격 변경 시	판매할 경우
중화풍 삼선짬뽕탕	14,000		. —
이탈리안 홍합탕	15,000	공문발송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매운 어묵 꼬치	12,000		2회 위반: 물품공급 중단
수제 어묵탕	14,000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만두 국물 떡볶이	10,000		
치즈 로제 떡볶이	12,000		
마라 로제 떡볶이	14,000		
모둠 플래터	25,000		
치즈볼과 스틱	8,000		
허나시나몬 고구마튀김	8,000		
치즈나쵸	8,000		
홈스타일 양파감자튀김	8,500		
링오징어와 감자튀김	14,000		
반건조 오징어땅콩	16,000		
쥐포 아귀포 마른안주	12,000		
바싹 황태채 구이	13,000		
버터오징어채와 마른안주	14,000		
파인애플 샤베트	7,900		
코코넛 샤베트	7,9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화 어조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고기 요리 및 생맥주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더블류스텔라	별컵맥주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0.5k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별 컵맥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별컵맥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_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별컵맥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4항 가호
○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 4항 나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 4항 다호
○ 가맹계약서 제7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하여 갑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 우	6조 4항 라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거래량이 금액기준으로 연간 월평균 5,000,000 (오백만)원 이하인 경우	6조 4항 마호
○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6조 4항 바호
○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6조 4항 사호
○ 가맹점 사업자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 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6조 4항 아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28조에서 정한 영업 양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양도한 경우	7조 1항 가호
○ 가맹점 사업자의 매장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매장사용권이 소멸되는 경 우	7조 1항 나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성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매장을 개점하지 못 하는 경우	7조 1항 다호
○ 가맹점사업자가 약정기한 내에 가맹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7조 1항 라호
○ 가맹점사업자가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연속하여 한달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7조 1항 마호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동일한 사유로 가맹 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 제 14조에 의해 2회 이상 물품공급을 중단 당한 경우	7조 1항 바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서 제14조에 의해 한달 이상 물품공급을 중단 당한 경우	7조 1항 사호
○ 가맹 본부가 약정한 물품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지체 하는 경우	7조 1항 아호
○ 가맹점 사업자가 상표사용료를 연체하여 2회 이상 물품공급 중단 조치를 받거나, 2번 이상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하여 상표사용료를 과소하 게 납입하는 경우	7조 1항 자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사로 사칭 및 가맹사업 유사행위를 하는 경우	7조 1항 차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 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	7조2항
	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7120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 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 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 맹본부가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확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환매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

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중 수 할 것 ○ 양수인은 양수당시 신규 가맹사업자의 계약 내용 과 동일한 기준 적용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의 가맹계약해지 및 신규 가맹계약체결(5일	문의 (02-499-8295)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당사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하고 이때 교육비를 납입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상속인은 반드시 당사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하고 이때 교육비를 납입해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 3개 월 이내 상속사 실 서면 통보 -> 당사의 사실 확인-> 가맹 계 약 승계	교육수료 및 교육비 납입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인 지정 신청 → 담당의 승인 여부 통지 → 대 리인이 가맹계약 사항 준수	교육수료 및 교육비 납입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별컵맥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별컵맥주 가맹점 영업과 동종의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499-8295)

단,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당사가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 개발, 발명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영업 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매장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 시에 영업비밀이 수록된 서면, 디스켓, 전산자료, 홍보, 각종 매뉴얼, 업무일지 등을 즉시 당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위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당당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별컵맥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사전에 문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6:00~02:00(10시간)	자율적인 주 6회 영업	문의: 가맹본부 (02-499-829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 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제한 없음	당사 교육을 이수한 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별컵맥주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 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별컵맥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당당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광고	전액부담	없음	별도 절차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날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가맹본부로 광고·판촉 활동 계획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정한 것을 위반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단, 해당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및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 당사 가맹계약 서 제 25조 가맹점의 주요 의무사항 참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3p~20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4 ~ 4(1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기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o점포의 시설, 장비,	o간판교체 비용	o점포의 확장 또는	o가맹점사업자의	ㅇ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에비라 광백용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로부터 3년 이내에	
노후화가 객관적	(재합의 교체	않는 점환경)선	계약서 등 공사	가맹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제외한	: 20%	비용을 증빙할	않는 사유로 계약이	
o위생이나 안전의	실내건 축공 사에	o점포의 확장 또는	수았셔봶	종료계약의 해자	
결함으로 인하여	소요는 알위 내용	이전을 수반하는	→ 90일 이내에	영양도 포함다는	
가방법의 횡생을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기맹본부 부담액을	경우 가맹본부	
유하기 어렵거나	통일성과 무관하게	: 40%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액 중 잔여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기간에 비례하는	
현저한 지장을	추가 광를 살기		(단, 가맹본부와	부담액은 지급치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간	아니하거나 이미	
	비용은 제외)		별도의 합마가 있는	지급한 경우에는	
			경우 1년의 범위내	환수 가능	
			에서 분화답기능		
			ㅇ가맹점사업자		
			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71 710 71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뷔
→ 3차에 걸쳐
기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T□ H 40/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	브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전단지,기념품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영업팀 (02 -499-829 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영업팀 (02-499-8295)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컵맥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	없음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별컵맥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별컵맥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청구	필요한 가맹점 대상
필수 교육	1일	실비 청구	전체 가맹점 대상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1조 3항에 따라 개점 전 3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21조 4항과 5항에 따라 기한 내 보수 교육과 필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위해 발생한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70-8244-479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 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및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